

신한카드(주)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관련 공시

(2016.8.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2016.7.26일 이사회를 통해 개정 된,
신한카드(주) '지배구조 내부규범(2016.8.1일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시 합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범은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의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범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법상 회사”란 「상법」 제169조의 회사(「상법」 규정을 준용하는 특별법에 의한 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 가. 「은행법」, 「한국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이하 “은행”이라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3.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업무책임자를 말한다.
4.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5. “사외이사”란 「상법」 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를 말한다.

6. “최고경영자”란 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역할과 지위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7. “이사회등”이란 상법 제390조에 따른 이사회 및 같은 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를 말한다.
8. “경영진”이란 임원중에서 사외이사와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9.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란 금융회사의 위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보상위원회가 심의의결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10.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행장·부행장·부행장보·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성과보상”이란 성과에 연동(連動)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상을 의미한다.
12.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란 회사가 제47조에 따라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 및 지배구조 운영 등에 관하여 매년 작성하여 공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13. “보상체계 연차보고서”란 회사가 제47조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의 보상지급에 관하여 매년 작성하여 공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14. “준법감시인”이란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 2 장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제1절 이사회

제3조(이사의 구성)

- ① 다양한 분야에서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절한 경험이나 지식 및 신한금융그룹의 창업 정신을 계승 발전 시킬 수 있는 신한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가진 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전문성에서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직업군 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 편중되지 않게 구성되도록 노력한다.
- ② 이사회는 3인 이상 9인 이내의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 ③ 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서 정한 인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해당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이사의 권한 및 책임)

-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 등 중요 규정의 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사항
 5.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
 6.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 이해상충 행위의 감독에 관한사항
 7. 회사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회사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분기별 경영실적 현황
2. 분기별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 현황, 지침 준수 현황
3. 사업연도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4. 다른 규정에서 정한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5. 기타 대표이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이익과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5조(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①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인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다.

③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의장, 회사로부터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제6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임시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8조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

이사회는 연1회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이사회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운영에 참고하며,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절 이사회내위원회

제9조(이사회내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내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1. 감사위원회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 리스크관리위원회
4. 보상위원회

- ② 이사회내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 ③ 이사회내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 ④ 이사회내위원회는 연1회 해당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며,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0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이하 이 조에서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한다.
- ② 감사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의 수가 제1항에 따른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에 따른 구성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한다.
- ③ 감사위원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 2.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제11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 2.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 후보 추천
 - 3.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2항 제3호의 후보군 관리 내역을 연 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이 스스로를 추천하지 못하며,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이사회등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2조(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 ①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회사가 부담 가능한 리스크수준의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4. 리스크관리규정과 리스크협의회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6. 리스크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금융감독원의 비소매 및 소매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그룹 내부등급법 승인 관련 의사결정 사항
9. 그 밖에 이사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보상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① 보상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보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이사를 1인 이상 참여하게 하여 보상체계에 위험 관리측면이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③ 보상위원회는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1.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2.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 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회사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결정
5. 보상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보상 체계와 관련된 사항

④ 보상위원회는 심의·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이사회내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사외이사는 보상위원회 및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회내위원회에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 시 이사회내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이사 및 최고경영자

제15조(이사의 선임 및 퇴임)

- ① 사내이사, 비상임이사,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사내이사, 사외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회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독립성 요건을 갖추고 다양한 분야로부터 금융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주주총회는 이사가 이사로서 신분을 유지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임할 수 있으며, 이사는 사임, 임기만료,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등의 사유에 의하여 퇴임한다.

제16조(이사의 자격요건)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 ② 사외이사는 그 재임기간 동안 2개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 감사로 선임될 수 없다.
- ③ 사내이사의 자격요건은 본 규범 제51조를 따른다.
- ④ 비상임이사는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제17조(이사후보 추천절차)

- ① 이사후보를 추천하는 이사회내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 ② 이사후보를 추천하는 이사회내위원회는 이사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이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시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 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 추천서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한다.

제18조(사외이사 후보추천 내역의 공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통지에 갈음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일을,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안내한다.

- 1. 사외이사후보 추천절차 개요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약력
3. 사외이사 후보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
4. 사외이사 후보자와 회사 및 자회사등(그 임원 및 대주주 포함)과의 관계
5. 관련법령 및 제16조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6.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7.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8. 그 밖에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9조(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정하며, 연임될 수 있다.
 1. 사외이사 : 2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
 2. 사내이사 및 비상임이사 : 3년 이내
- ② 제1항의 임기는 그 임기 중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 ③ 이사가 재임하기 위해서는 이사 재임기간 동안의 제24조에 의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사외이사는 5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 중의 5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재임함에 따라 재임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사외이사가 사외이사 임기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 종료일로부터 2회째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선임되더라도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⑥ 제4항의 사외이사 재임기간은 자회사등의 사외이사(자회사등의 사외이사 퇴임 후 2년 이내에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에 한한다)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20조(신임 사외이사 선임비율)

- ① 회사는 사외이사 총수의 5분의 1 내외에 해당하는 수의 사외이사를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직전년도 정기주주총회 후 소집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경우는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거 5년간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의 총수가 과거 5년간 사외이사 수(정기주주총회일 기준 사외이사 총수를 말한다)의 연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제1항 전단은 사외이사 총수가 5인 미만일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사외이사의 역할)

사외이사는 이사회등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하여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22조(이사의 자료요청권 등)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이사의 책임)

- ① 이사는 이사회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사회등이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한다.
- ② 이사는 제1항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일정시간 이상을 이사회등에의 참여에 할애한다.
- ③ 이사는 재임기간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 ⑤ 회사는 매년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하여 이사 재임시의 활동에 대해 퇴직 후에도 통상적인 책임보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⑥ 회사가 제5항에 따라 가입·갱신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사외이사 자기부담액을 최대 한도 1억원 이내에서 배상책임액의 20% 이상으로 설정한다.
- ⑦ 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하 이 항에서 “사외이사등”이라 한다)이 수탁자·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수탁자·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등”이라 한다)이 회사(자회사 등 회사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기부금(이에 준하는 혜택을 포함하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기 이전에 회사가 회원·사원 등으로 참여한 비영리법인등의 정관 등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기부금·출연금 등은 제외한다. 이 항에서 “기부금등”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해당 사외이사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소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1. 사외이사가 회사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된 경우 선임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할 것
 2. 사외이사가 선임된 이후 사외이사등이 비영리법인등의 수탁자·임직원이 되는 경우 수탁자·임직원이 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할 것

제24조(이사에 대한 평가)

- ① 회사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사외이사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다.
- ② 회사는 2년 이상 재임하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이사회는 제1항의 평가 방법 및 평가 절차를 정하여야 하며, 평가 기준을 외부 기관의 자문을 받아 설계하는 등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외부 평가기관을 선정할 경우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하되, 회사와 최근 3년 이내에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고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 ⑤ 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제1항에 따른 평가 실시 여부와 그 결과를 공시한다.
-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한다.

- ⑦ 사내이사에 대한 평가는 본 규범 제57조를 따른다.
- ⑧ 비상임이사에 대한 평가는 사외이사의 평가를 따른다. 다만, 겸직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이사의 보수)

- ① 이사회는 사외이사의 이사회내위원회 참여도 등 활동실적에 상응한 보상체계를 수립한다.
- ② 사외이사의 보수는 기본수당, 직책수당, 회의 수당, 참가 수당 등으로 구성하며,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사내이사의 보수는 본 규범 제58조를 따른다.
- ④ 비상임이사의 보수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따른다. 다만, 겸직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운영)

- ① 회사는 사외이사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사외이사 지원 부서를 운영한다.
- ② 이사회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제5조 제3항에 따른 선임사외이사의 업무 지원
 - 2. 제11조 제2항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업무지원
 - 3.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지원
 - 4.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검증 업무 지원
 - 5.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 ③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제2항제2호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 ① 회사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사와 자회사등의 업무 집행상황 등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한다.
- ② 이사가 경영정보의 보고 또는 제공을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 ③ 회사는 이사회등의 회의자료를 회의일 2주일 전까지 발송하여 해당 이사회등에 참여하는 사외이사가 회의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한다.

제28조(이사에 대한 자문용역의 제공)

회사는 이사가 이사회등의 활동을 위해 외부기관의 법률.회계.경영 관련 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한다.

제29조(이사에 대한 교육)

- ① 회사는 신임 이사에 대하여 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보고 등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대신할 수 있다.
 1.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중에서 선임된 경우
 2. 다른 금융기관의 재직 경력 등으로 업무 전문성을 인정받아 선임된 경우
- ② 회사는 이사를 위한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한다.

제2절 최고경영자

제30조(최고경영자의 자격)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 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최고 경영자로 선임한다.

제31조(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최고경영자를 추천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최고경영자후보추천절차 개요
2.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최고경영자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2조(책임경영체제 확립)

- ① 회사는 경영진의 임기를 상당 기간으로 하고 경영진(등기 임원 제외)의 선임과 해임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거나 이사회에 보고를 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의 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한다.
- ② 회사는 능력에 근거한 경영진의 선임, 역할의 명확화, 필요한 권한의 위임 등을 통하여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경영진의 임면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해임 및 퇴임사유 등을 명문화 한다.

제4장 감사위원회

제33조(기본원칙)

-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는다.
- ② 감사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한다.

제34조(감사위원회의 권한 등)

-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제공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그 밖에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 ② 경영진은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35조(감사보조조직)

- ① 감사위원회에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보조조직을 둔다.
- ② 감사보조조직은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보조한다.
- ③ 회사는 효율적 감사를 위하여 적정한 인력으로 감사보조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상근감사위원 등)

-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상근감사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상근감사위원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감사 등의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1.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 따른 일상감사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3. 감사실시 등 내부감사부서 업무 통할
 4.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제5장 보상위원회 및 보상체계 등

제37조(기본원칙)

- ① 보상위원회는 회사의 보상관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보상체계가 리스크 구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보상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과도한 성과보상 지급으로 회사의 자본적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③ 회사는 건전한 성과주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임직원의 보상제도를 설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제38조(보상위원회 활동의 서류 보존)

회사는 보상위원회의 설치·운영 내역과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부서의 관리·감시활동내역을 서류로 보존한다.

제39조(보상과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 ① 회사는 풍부한 경험과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가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담당자로 채용·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② 회사는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부서가 회사의 보상관련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하고,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업무가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시 대상이 되는 분야의 성과와는 독립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40조(성과보상의 원칙, 설계 및 조정)

- ①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보상 중 성과보상 비율은 성과평가와 연동하고, 그 비율은 책임의 정도, 직무의 특성, 담당 업무의 투자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따라 달리한다.
- ②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의 상당부분을 성과보상으로 하고, 리스크 요인 등을 감안한 성과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③ 회사는 재무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경영진(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 제42조에서 같다),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성과보상 규모가 조정될 수 있도록 보상제도를 설계한다.

제41조(이연지급)

- ①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성과보상은 담당 업무의 투자성 정도, 투자성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당부분을 수년간 이연지급하며, 특히 최고 경영진과 고액연봉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경우 이연지급하는 성과보상의 비율을 상당수준 이상으로 한다.
- ② 이연지급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투자성 존속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성의 존속기간 수준으로 이연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 ③ 이연지급시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 배분한 수준보다 작도록 한다.

제42조(성과보상의 지급형태 및 방식)

- ① 회사는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성과보상 중 상당부분을 주식 또는 주식연계 상품 등 회사의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는 형태로 지급한다.
- ② 회사는 주식 또는 주식연계 상품에 대하여 부여시점 이후 최소 일정 기간 동안 지급이 유보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회사는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장기보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제43조(현금보상 지급 등)

- ① 이연지급된 보상 중 주식 및 주식연계상품 등의 방식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제외한 잔여 부분은 점진적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현금보상으로 지급될 수 있다.
- ② 지급확정기간 중 회사는 재무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급 미확정 부분을 재무성과나 손실규모 등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제44조(보장형 상여 및 과도한 퇴직보상의 제한)

- ① 회사는 보장형 상여를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규 임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최소의 보장형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1년으로 한정한다.
- ② 회사는 과도한 퇴직 보상으로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창출 및 리스크관리의 건전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제45조(개인적 리스크회피 전략 등 금지)

회사 임직원들은 보상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개인적 리스크회피 전략 또는 보상 관련 보험을 활용해서는 안된다.

제46조(성과평가 지표)

- ① 회사는 단기적인 외형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장기 성과와 수익성, 건전성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계량화되지 않은 평가지표를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경영진의 성과평가 지표를 설정하며, 계량화되지 않은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평가가 관대해지지 않도록 한다.
 1. 외형 및 자산 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건전성 및 수익성 관련 지표를 반영
 2. 수익성 지표를 사용할 경우 비정상적인 요인들은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위험을 감안한 수익성 지표를 반영
 3. 재무적 지표 이외에 비재무적 지표로서 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다양한 지표를 반영
 4. 회사의 성과를 장기간에 걸쳐 측정·평가하고 장기성과의 지급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 이연지급 변동보상 제도를 활용
5. 내부목표 달성 외에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금융회사간 비교 가능한 성과지표를 반영

제6장 공시

제47조(정기공시)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작성한다.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회사가 속한 관련 협회 등의 장이 정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 기준에 따른다.
1.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지배구조 내부규범, 윤리강령 등) 및 지배구조 현황
 2.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등에 관한 다음의 각 목의 사항
 - 가.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등의 역할, 책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 나.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 다.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부의장이 있는 경우 부의장, 선임사외이사가 있는 경우 선임 사외이사, 그 밖의 구성원 명단 및 경력
 - 라.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회의개최 횟수 및 이사들의 개인별 참석 현황
 - 마. 최고경영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이유
 3. 임원후보추천에 관한 다음의 각 목의 사항
 - 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
 -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명단 및 약력
 - 다. 사외이사 후보의 자격요건, 후보추천 절차, 사외이사 업무수행 평가방식 등 사외이사 선임기준
 - 라. 사외이사 후보자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
 - 마. 법에 따른 사외이사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 바. 사외이사 후보와 회사 및 자회사등(그 임원 및 대주주 포함)과의 관계
 - 사.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및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 아.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 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후보군 추천과 관련하여 보고한 내용
 - 카. 이사회사무국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 타. 그 밖의 이사회가 정한 사외이사후보추천 관련 사항
 4. 사외이사의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의 각 목의 사항
 - 가.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의 회의일시, 보고안건을 포함한 안건내용,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위원회 참석 및 찬성 여부
 - 나. 사외이사에 대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현황
 - 다. 사외이사에 대하여 제공한 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실시 현황
 - 라. 관련 법령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
 - 마. 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하 이 호에서 “사외이사등”이라 한다)이 수탁자·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수탁자·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 등의 제공내역
 - 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근거로 한 평가 개요 및 평가 결과
 - 사. 사외이사 지원부서 지정 및 운용현황

- 아. 사외이사 개인별 재직기간
- 자. 사외이사 개인별 보수 총액 및 내역
- 차. 사외이사 개인별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의 제공 현황
- 카. 회사와 사외이사등 소속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 타.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 나. 회사 최고경영자후보 추천절차 개요
- 다.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 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가 진행된 경우 내역
-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내역
- 바. 이사회외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 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현황

6. 감사위원후보추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
-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명단 및 약력
- 다. 감사위원후보의 자격요건, 후보추천 절차, 감사위원 업무수행 평가방식 등 감사위원

선임기준

- 라. 감사위원 후보자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
- 마. 법령에 따른 감사위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 바. 그 밖의 이사회가 정한 감사위원후보추천 관련 사항

7.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사항

- 가. 보상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을 포함한 회사의 보상체계 의사결정 절차
- 나. 성과측정 및 위험 조정 기준, 성과와 보상의 연계성, 이연, 지급확정 및 환수기준, 현금과 주식, 그 밖에 보상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등을 포함한 보상체계의 주요 특성

8. 리스크관리위원회 활동 내역

9. 지배구조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권고·지시한 사항 및 회사의 개선 내용 또는 계획

10.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상체계 연차보고서를 작성한다. 보상체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작성 기준에 따른다.

- 1. 보상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책임을 포함한 회사의 보상체계 의사결정 절차
- 2. 성과측정 및 위험 조정 기준, 성과와 보상의 연계성, 이연, 지급확정 및 환수기준, 현금과

주식, 그 밖에 보상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등을 포함한 보상 체계의 주요 특성

3. 회계연도 중 보상액(기본급 및 성과보상을 구분하고 대상 임직원수를 포함한다)
4. 성과보상 금액 및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및 기타로 구분한다)
5. 이연된 성과보상(지급이 확정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한다)
6. 이연된 성과보상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
7. 회계연도중 지급된 퇴직 관련 보상금액, 해당 임직원 수 및 1인기준 최고 지급액
8. 회계연도중 임직원에게 지급된 보상금액, 직급별 보상액 및 성과보상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등이 직전년도에 발생한 변동보상에 관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년도 변동보상은 이를 결의하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한다.

- ③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및 보상체계 연차보고서는 익년도 정기 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해당 회사 및 관련 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등이 직전년도에 발생한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보상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년도 변동보상은 이를 결의하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한다.
- ④ 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및 보상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동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48조(수시공시)

- ① 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 포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 ② 회사는 제14조의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시한다.
- ③ 회사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경우 회의일시, 보고안건을 포함한 안건내용, 사외이사의 참석 및 찬성 여부 등을 익월 15일까지 공시한다. 다만, 익월에 공시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어려운 경우 해당 기간 이내에 향후 공시 날짜, 지연사유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시계획을 공시한다.

제49조(주주총회)

- ① 회사는 사외이사 관련 주주총회 안건 상정 시 사외이사후보추천 등 성격이 상이한 안건들을 포괄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개별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 의장, 이사회내위원회 위원장은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들의 질의에 답변한다.
- ③ 회사는 주주총회가 종료된 후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행사 주식수, 안건별 찬·반 주식수 비율 등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제50조(공시방법)

이 규준에 따른 공시는 회사 및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제7장 경영진에 관한 사항

제1절 경영진의 자격요건

제51조 (경영진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영진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2절 경영진의 권한과 책임

제52조(권한과 책임)

① 최고경영자는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를 결의 사항을 집행하며 다음 각호의 역할을 담당한다.

1. 주주, 관련기관 등 회사의 이해관계인과의 의사교류 원활화를 위한 역할
2. 회사 업무 전반의 총괄 및 이해관계인의 조정 역할
3.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요청하는 역할

② 최고경영자 이외의 경영진은 최고경영자의 업무를 보좌하고, 소관업무 일체를 관장한다.

③ 경영진은 이사회와 이사회내의 각 위원회 및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 하여야 한다.

④ 경영진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3절 경영진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53조(경영진의 선임 및 해임)

- ① 최고경영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 최고경영자 아닌 경영진은 이사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③ 이사회는 자질, 업적, 역량 등을 감안하여 경영진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경영진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경영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경영진 직위에서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1. 법규, 정관, 내규, 위임계약서에 명시된 의무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경영진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회사와 경영진간에 체결된 위임계약서에서 해임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제54조(업무대행자 선임 등)

- ① 최고경영자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전략기획, 재무기획,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진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결의하는 경영진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1,2항 외의 경영진의 유고 시에는 최고경영자가 정하는 경영진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임기)

최고경영자는 이사의 임기에 따르며, 최고경영자 아닌 경영진의 임기는 2년의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를 담당하는 경영진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제4절 경영진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

제56조(경영진 등에 대한 교육 및 평가 활용)

- ① 회사는 경영진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하여 전략, 리더십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경영진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제도를 운영하며, 그 평가결과를 경영진 선임 시 고려한다.

제5절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상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제57조(경영진의 성과평가)

- ① 경영진에 대한 평가는 보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 ② 경영진에 대한 평가는 계량적인 평가 외에 정성적인 평가를 병행하며, 담당업무 성과 외에 회사등 조직 단위의 업무성과와 연동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③ 경영진에 대한 평가결과는 보상의 지급이나 재선임 또는 해임시에 활용한다.

제58조(경영진의 보상)

- ① 경영진의 보상은 보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 ② 경영진의 보수는 연봉(기본급, 단기성과급)과 활동수당으로 하며, 보수와는 별도로 성과연동형 장기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등

제59조(내부통제체제)

- ① 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한다.
- ②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통제규정에서 정한다.

제60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 ①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두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한다.
- ③ 회사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 ⑤ 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61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원장, 그 밖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가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 (라목 후단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라목 전단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같은 조 제5호의2에 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과 같은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준법감시인이 된 사람이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62조(리스크관리체제)

① 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한다.

②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리스크관리규정에서 정한다.

③ 회사는 리스크관리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이사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리스크관리 업무 지원을 위해 리스크협의회를 설치한다.

④ 리스크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63조(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의 임면)

① 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를 임면한다.

②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를 임면한다.

③ 회사가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를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⑤ 회사는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64조(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①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관련 기관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가 된 사람이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65조(준법감시인 및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의 겸직 금지 등)

준법감시인과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회사의 본질적 업무(해당 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3. 회사의 겸영(兼營)업무

4. 자회사등의 업무(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가 자회사등의 리스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

5.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66조(준법감시인 및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에 대한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한다.

- ③ 회사 및 임직원은 준법감시인 및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한다.
- ④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였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 ① 이 규범은 2015.2.26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범은 2016.8.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등)

- ① 제19조의 규정은 이 규범 시행 후 선임(재선임과 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한다.
- ② 이 규범 시행 후 선임되는 사외이사의 제19조제3항에 따른 총 재임기간 산정과 관련해서는 이 규범 시행 전 재임한 기간에 대해서도 제19조제4항을 적용한다.
- ③ 회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임기 등을 고려하여 이 규범 시행 후 최초로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제20조에 따른 선임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그 이유와 준수계획을 주주총회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공시한다.
- ④ 이 규범 시행일 현재 사외이사로 재임 중인 자도 제23조제7항제1호과 관련해서는 이 규범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초로 선임되는 것으로 본다.